조약의 체결·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49

발의연월일: 2024. 8. 19.

발 의 자: 박주민·이해식·이건태

이병진 · 김윤덕 · 백혜련

장종태 • 이기헌 • 황정아

오세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우리나라는 경제·사회·문화·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,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자유무역협정(FTA), 이중과 세방지협정, 사회보장 협정, 투자보장협정,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조약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건수가 증가 되는 추세임.

그러나 현재 조약의 체결 절차를 규정하는 법규는 헌법, 법률과 「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」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, 통일적이고 유 기적인 조약체결절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임.

또한, 조약은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양을 미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입법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,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행사범위는 문안의수정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,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

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정부 권한에 속하는 것이여서 국회의 관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.

이에 조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함과 동시에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, 조약 체결 관련 사항을 국민 일반에 예고하게 하는 등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과정 전반을 민주주의 원리에 적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,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외교부장관은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,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(안 제5 조 및 제6조).
- 나. 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를 두고, 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 간으로 구성하는 분야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- 다. 외교부장관은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약문안을 작성하도록 함(안 제9조제1 항).
- 라. 외교부장관은 작성된 조약문안 등을 예고하도록 함(안 제10조).

- 마. 외교부장관은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려는 경우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대표를 임명 또는 임명제청하 고 협상단을 구성하도록 함(안 제12조).
- 바. 외교부장관은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, 국회는 협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- 사. 외교부장관은 서명한 조약안이 「대한민국헌법」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(안 제17조).
- 아. 외교부장관은 체결·공포된 조약에 관하여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(안 제22조).
- 자. 다자조약, 간이조약에 대한 특례조항을 둠(안 제26조 및 제27조).

법률 제 호

조약의 체결 · 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조약의 체결·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조약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과 조약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조약"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국제적 합의를 말한다.
- 2. "간이조약"이란 이미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 적·절차적 사항만을 정하거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약을 말한다.
- 3. "비준"이란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서명, 수락, 승인, 가입 등 그특정의 명칭이나 방법 및 절차에 관계없이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국제적 행위를 말한다.
- 4. "당사국"이란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부여하여 조약이 발효

하고 있는 상대 국가 및 국제기구를 말한다.

- 제3조(다른 국제조약 및 국내법과의 관계) ① 하나의 조약은 기존의 다른 국제조약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국제조약과 양립이 가능하거나 조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③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. 제4조(조약의 해석)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.

제2장 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

- 제5조(조약체결계획의 수립) ① 외교부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제7조에 따른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(이하 "조약체결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조약체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조약체결의 목적·타당성
 - 2. 분야별 조약의 주요내용

- 3. 조약의 연간 추진일정
- 4. 조약이 국내 경제 ·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지원 방안
- ③ 그 밖에 조약체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조약체결계획의 국회 보고 등) 외교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.
- 제7조(조약체결심의위원회) ① 조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(이하 "조약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조약체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조약 체결의 예고에 관한 사항
 - 3. 조약 체결로 인하여 국내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그에 따른 국내 대책·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 - ② 조약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 중 「정부조직법」 제26조에 따른 행정각부의 장관은 당연 직 위원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자 중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2분의 1을 위촉한다.

으로 정한다.

- 1. 체결하고자 하는 조약과 관련된 분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전국 규모 단체의 대표자
- 2. 체결하고자 하는 조약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그 밖에 조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
- 제8조(분야별자문위원회) ① 조약위원회에 조약의 분야별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조약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야별자문위원회(이하 "자문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한다.
 -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조약의 체결 및 비준 절차

- 제9조(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) ① 외교부장관은 조약의 체결 등을 위하여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약문안을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외교부장관은 조약문안이 해석상 의문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약문안을 작성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조약 체결의 예고) ① 외교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약문 안을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조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고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조약 체결의 배경 및 필요성
 - 2. 체결하려는 조약의 주요내용
 - 3. 조약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
 - 4. 작성된 조약문안
 - 5. 그 밖에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조약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
 - 2. 조약의 체결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
 - 3. 간이조약의 경우
 - 4. 조약의 성격상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
 - ③ 예고의 방법·기간·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하여는 「행정절차법」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.
- 제11조(공청회 개최) ① 외교부장관은 조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이해 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 다. 다만, 「대한민국헌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약의 체결을 추

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공청회에 관하여는 「행정절차법」 제38조, 제38조의2, 제38조의3, 제39조와 제39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.
- 제12조(협상단 구성)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대표를 임명 또는 임명제청하고 협상단을 구성한다. 이경우 외교부장관이 임명제청하는 정부대표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
 - ② 협상단의 수석정부대표는 다른 정부대표를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상분과를 편성하여 협상분과장을 지명하고 그 밖에 협상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- 제13조(협상 진행의 보고 및 의견제시) ① 외교부장관은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국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협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의 의견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4조(가서명) 정부대표는 협상의 당사국과 합의한 조약문안에 가서 명하고 협상을 종료한다.
- 제15조(협상결과의 보고 등) 정부대표는 제14조에 따라 협상을 종료하 였을 경우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서명) 외교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가서명된 조약안을 법제처

- 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서명하거나 정부대표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.
- 제17조(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) ① 외교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서명한 조약안이 「대한민국헌법」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에 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외교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서명한 조약안이 「대한민국헌법」 제60조제1항의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도 그사유를 적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국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약안이 「대한민국헌법」 제60조 제1항의 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조약안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부는 지체 없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8조(비준동의안 첨부서류) ① 정부는 제17조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조약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1. 제10조에 따른 의견수렴과 제11조의 공청회 결과
 - 2. 이행법령의 제정·개정 사항
 - 3.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약안의 경우에는 그 조약 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

- ② 국회는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준동의안의 경우에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.
- ③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조약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약안의 국회 심 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9조(비준서의 서명 등) ① 대통령은 비준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거나 제17조제3항 전단의 기간이 지난 조약안의 비준서에 서명 하고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이 이에 부서한다.
 -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비준서를 협상 상대국과 교환하거나 해당 국제기구에 기탁한다.

제4장 조약의 발효와 이행 등

- 제20조(조약의 발효) ① 조약은 그 조약 또는 국제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발효된다.
 - ② 조약은 「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포한다.
- 제21조(조약의 제출) ① 외교부장관은 체결·공포된 조약을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조약을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사유를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조약의 이행평가) ① 외교부장관은 체결·공포된 조약 가운데

지속적인 점검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행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장 조약의 개정 및 변경 등

- 제23조(조약의 개정 및 변경) ① 조약은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 간의합의에 따라 개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.
 - ② 조약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.
- 제24조(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) ① 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는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라 행하여질 수있다.
 - ② 조약에서 종료·폐기 또는 탈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폐기 또는 탈 퇴를 인정할 수 있다.
 - 1. 당사국이 폐기 또는 탈퇴의 가능성을 인정하고자 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
 - 2. 폐기 또는 탈퇴의 권리가 조약의 성질상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③ 당사국은 조약의 폐기 또는 탈퇴의 의사를 적어도 12개월 전에

통고하여야 한다.

- ④ 외교부장관은 조약의 종료·폐기 또는 탈퇴를 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조약문의 착오정정) 조약문의 정본인증 후 그 속에 착오가 있다는 것에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 착오의 정정은 정정 방법에 관한 당사국 간의 합의에 의하되, 당사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을 따른다.
 - 1. 착오문에 정정을 한 후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그 정정 에 가서명하는 것
 - 2. 합의된 정정을 기재한 문서에 효력을 부여하거나 이를 교환하는 것
 - 3. 원본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조약 전체의 정정본을 작성하는 것

제6장 보칙

- 제26조(다자조약에 대한 특례) 둘 이상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상대 방으로 하는 조약에 대하여는 국제적 관례 또는 조약의 성격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 가서명과 제16조 의 서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.
- 제27조(간이조약에 대한 특례) 간이조약에 대하여는 제10조 · 제11조 ·

제13조,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2조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진행 중인 조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조약의 체결 등을 위하여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 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